

“**깡**”



예천사랑상품권

부정유통

연중 단속

부정유통 적발 시 2천만원 과태료 부과

단속대상

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행위,
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,
가맹점 자격이 없음에도 상품권 수취 행위, 환전대행 행위 등

< 단속근거 -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>

부정유통 적발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조치, 가맹점 취소

부정유통 신고 : ☎.054) 650-6096

(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 혹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> 분야별정보 > 예천사랑상품권)

부정유통시 과태료 부과

위반주체	위반행위	과태료(위반 횟수별)
• 가 맹 점	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 수행 시	1차: 일천만원 2차: 일천오백만원 3차: 이천만원
	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 대행 가맹점에 환전을 요청	
• 판매대행점	지자체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상품권 보관·판매·환전 업무 대행 시	1차: 일천만원 2차: 일천오백만원 3차: 이천만원
• 가 맹 점 • 사 용 자	위반행위 조사 거부·방해·기피 시	1차: 이백만원 2차: 삼백만원 3차: 오백만원

'20년 7월 2일 시행 법률 근거



예천군